

2026년 상반기 극지연구소 연수생 2차 채용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에서는 극지과학의 미래를 함께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장

1. 연수분야 및 인원

직종	연수분야 (연수과정)	전공분야	자격 요건	채용 인원
연수생	해양대기화학 (석사과정)	대기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기상학, 해양학, 환경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1명

* 세부 직무내용은 NCS기반 직무기술서(붙임) 참고. 모집분야의 책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 자격요건

내용
○ 상기 <1. 연수분야 및 인원>의 연구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26년도 1학기 기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로서, 타기관 및 타산업체에 취업되지 않은 자(휴학생, 미등록 수료생 연수 불가) ○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제출, 근로계약 체결(연수 시작) 시 연수생 등록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성명 외 블라인드 처리 필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근로계약 체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장학금 수혜, 기타 연구사업에 참여 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 연구소 규정(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만 61세 이하인 자 ○ 연구소 규정(인사규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자 등)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법적·행정적 처분 또는 당시 근무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입소가능한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근무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국내 근무))

3. 연수형태 및 기간

구분	내용
직급	○ 연수생 (급여기준은 연구소 내규에 따름)
연수기간	○ 2026년 7월 ~ 재학 종료 시 (하단 유의사항 참고 필)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연수)기간은 해당 연수생의 재학 기간에만 가능하며 (대학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일로부터 연수 가능) 근로계약별 계약기간은 1년 이내 단위로, 최대 계약(연수)기간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8년, 석박사통합과정 10년 이내로 함 ○ 연구소와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 소속 학교에서 졸업, 휴학, 자퇴, 제적되거나 수료후 연구생으로 미등록 될 경우 계약종료 및 해지 처리 ○ 근로계약기간 중 해당 학위과정을 졸업하는 때에는 졸업 당월로 근로계약 종료 * 단, 석사과정 졸업 후 연속하여 박사과정을 입학하는 경우, 박사과정 입학일에 근로계약 재개

4. 채용절차 및 합격기준

구분	주요내용 및 일정	비고
서류접수	○ 연구소 채용사이트(https://kopri.recruiter.co.kr) 작성 ○ 서류접수 : 2026.5.22.(금) ~ 2026.6.5.(금), 18:00까지	• 온라인 채용사이트 외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1차 전형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블라인드 위반 여부 심사 - 학위 기준 등 자격요건 사항 확인, 필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블라인드 위반 여부 등 확인 ○ 연수적합성, 연수관심도 등에 대해 평가 - 자격, 자기소개서, 연수 수행역량, 연수계획서 등 ○ 서류심사 : 2026.6.15.(월) ~ 2026.6.19.(금)	• 평점 60점 이상인 자 (5배수 이내 선정)
2차 전형 (면접심사)	○ 면접(인성분야, 전문지식 분야 심사) - 인성분야, 전문지식 분야 등 * 해외 거주자는 화상면접 진행 가능 ○ 면접심사 : 2026.6.29.(월) ~ 2026.7.3.(금)	• 심사분야별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총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차순위자순 2배수 이내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재실시
채용 후보자 선정	○ 결격사유 확인 및 채용 신체검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월 중	• 이메일 및 문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작성 시

구분	제출서류
공 통	*공통 제출 서류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s://kopri.recruiter.co.kr)에서 직접 작성하며, 각 지원분야 필수항목 미입력 시 서류 불합격 처리 ※ 본인 이름을 제외하고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성별(군복무(의무복무), 종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할 것(해당 사항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공정채용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서 제출 버튼 클릭 이후 자료의 보완이나 수정 불가 - 학력사항 (전공 및 학위) ※ 필수 입력 - 경력 사항 및 자격 사항 ※ 해당시 입력 - 공인어학(영어)시험 성적 ※ 해당시 입력 - 자기소개서 1부 ※ 온라인 채용사이트 자기소개서란에 필수 작성 - 연수 수행 역량 및 연수계획 1부 ※ 온라인 채용사이트 역량기술서란에 필수 작성 ○ (재학생) 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 ※ 성명 외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입학예정자) 대학원 입학예정증명서 1부 ※ 성명 외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수료후 등록생) 해당 증명서 1부 ※ 성명 외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중요) 학위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중요)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성명 외, 개인 신상(사진, 성별·가족관계·연령·종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문구 및 이미지 삭제 후 제출(기재시 불합격 처리), 특히 학위논문 내 감사글 등 평가와 무관한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기재시 불합격 처리) ※※※ (중요) 단, 개정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전공(연구) 부합도 및 연구수행 실적 판단을 위해 학위취득 기관명, 연구수행 기관 경력 등에 대한 정보는 제출 가능(세부사항 6. 응시원서(온라인 채용사이트) 작성 및 지원자 유의사항 참고)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빙서류 각 1부(채용 사이트 작성 및 첨부) ※ (중요)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성명 외, 개인 신상(사진, 성별·가족관계·연령·종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문구 및 이미지 삭제 후 제출(기재시 불합격 처리) ※※ 지원서에 해당 내용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가점 적용

나. 2차 전형 시

구분	제출서류
필수	* 지원 필수자격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필수 제출 서류 외에는 해당 시 제출) ○ 서류전형 시 기재한 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서류전형 시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시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 시 기재한 공인어학시험성적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장애인 증명서 관련 증빙서류 ※ 공고문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서에 해당 내용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가점 부여 ※※ 제출서류는 자격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며,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다. 최종 면접전형 종료 및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 항목
○ 학위별(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약약서 1부(별도 양식 안내)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도 양식 안내)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별도 양식 안내) ○ (해당자)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 (해당자) 병적(兵籍)증명서(군필자에 한함) 1부 ○ 신체검사 적합 증명서 ○ 입소 및 근로계약 체결 시, 2026년도 1학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전공이 기재된 대학원 재학 증명서 별도 추가 제출 필요 (수료후 등록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채용후보자 선정 시 별도 제출 안내 예정,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6. 응시원서(온라인 채용사이트) 작성 및 지원자 유의사항

○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조치 안내〉 ① 지원서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지원서 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인적사항 (생년월일(연령), 성별(의무복무), 사진, 종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1차전형(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됨 ③ 제출 자료 내 지원자의 연구역량과 무관한 정보(감사글 등)는 반드시 삭제(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위반 시 불합격 처리) - 단, 개정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전공(연구) 부합도 및 연구수행 실적 판단을 위해 다음 정보에 한하여 정보 제출 가능
〈개정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인력 채용시 추가 수집 가능 정보〉 ① 학위취득 기관명, 연구수행 기관 경력, 졸업논문 및 연구논문 내 특정 정보(지도교수명, 논문의 교신·공동저자명, 출신학교 e-mail 계정 및 학위취득기관) ※(중요) 수집 정보는 지원서 별도 기재란 및 연구(학위)논문 첨부에 한하며, 그 외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내 기재 금지
○ 제출 서류의 경우 증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사항 불인정 ○ 지원서 허위 작성,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불합격으로 처리(합격 이후도 포함)되며, 이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비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되므로 자료 제출 시 재확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함 ○ 최종합격자가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자국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함

7. 우대제도(가점)

가산 유형	유형 정의	증빙명(종류)	전형별 가산점	
			1차전형	2차전형
법령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¹⁾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5% 또는 10%
특별 가점	등록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만점의 5%	만점의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모집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 모집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가점 증빙자료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가점 진위확인 용도로만 활용

3) 모든 우대제도(채용가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4) 우대제도(채용가점)의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만 인정

5) 가점 부여 기준자격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 구비 필요

8.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의 반환

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대상 : 채용 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 사항
- 신청기간 :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recruit@kopri.re.kr), 각 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양식 포함)
- 기타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불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나.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출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지원자가 요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 다만,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이메일(recruit@kopri.re.kr)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
- * 신청자 수험번호, 성명,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 반환 대상 서류 등 기재하여 제출

9. 기타사항

- **본 공고 내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전형단계별 결과(합격 및 불합격 통지)는 온라인 지원서 상에 기재한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
- 채용분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면접 합격자가 임용 확정 전 입소 포기 또는 합격취소 시, 2배수 이내로 선정된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면접 결과 안내 시 예비합격자 개별 통지 예정)**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관련서류는 전형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인된 영문 번역문과 본인이 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첨부 필수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결격사유 확인,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외국국적자는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및 입소예정일('26.7월 예정)을 기준으로 합법적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증빙할 사증(visa) 제출가능한 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가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자국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사전준비 필요
- 접수마감일에 채용지원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미접수되었더라도 접수 마감시간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형 절차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만 응시 가능**
- 관련정보 및 채용진행 사항은 연구소 채용사이트(<https://kopri.recruiter.co.kr>) Q&A 문의

붙임1.**채용 분야별 연수제안서**☐ **연수분야: 해양대기화학**

구분		공고 제2026-연수생(상)-01	
연수 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석사과정	
연수 분야명		해양대기화학	
전 공 명		해양학, 대기학, 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연수 과제 정보	과제명	남극과학기지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요인 모니터링	
	과제 설명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 해양 및 대기 환경 변화 요인 분석	
연수부서명		해양대기연구본부	
연수인원		1 명	연수기간 근무 개시일 ~ 재학 종료시
연수내용		- 대기질 기본 관측자료(오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분석 및 장/단주기 변동원인 분석 - 테라노바만 해양 용존 이산화탄소와 산소, pH, 엽록소,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장/단주기 변동원인 분석	
필요지식		- 학부에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기상학, 해양학 관련 과목 수강 필수 - 물리화학, 열역학, 통계학 관련 과목 수강 - 컴퓨터 언어 (C, Fortran, MatLab, Python, R 등) 관련 과목 수강	
필요자격		- 학사학위	
우대사항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영어 TOEFL 점수 80, TOEIC 800 이상 우대	

극지연구소는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견 없는 공정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 블라인드 처리 기준

□ 개인 신상정보

- 입사지원서 상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나이, 성별 등) 관련 내용 기재된 경우 불합격 처리. 단, 아래 예시와 같이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 예외
예) 00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 00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이메일, 동아리명 등 출신학교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기재 금지
- 직무관련 경력 확인을 위해 기업명, 공공기관명은 작성 가능

□ 증빙자료 블라인드

- 증빙자료 내 개인인적사항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2. 블라인드 처리 위반(직접적 유추 가능) 사항 안내

항목	기준 및 예시
출신지역	•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예시)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자라왔으며~ 위반
가족관계	•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예시) 부모님께서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위반 - (예시) 아버지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위반
생년월일 및 연령	• (기준) 입사지원서 생월일 기재란 외에 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위반
성별	•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예시)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위반 - (예시) 00여대를 졸업하고~ 위반 - (예시)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위반 - (예시)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빠/엄마로서의 책임을 알게 되었으며~ 위반 - (예시) 조직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위반
출신학교	•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예시) 박사 졸업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위반 - (예시) SNU 000 교대 동아리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위반 - (예시)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abcde@snu.ac.kr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위반

3. 입사지원서 검토 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 처리 기준

항목	기준 및 예시
블라인드 기준	블라인드 기준 위반의 경우 : 상기 2번 예시 해당 시 불합격 처리
지원서 불성실	- 지원서 작성 불성실 : 아래 예시 해당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예시) 각 항목 30% 미만 분량 기술 (예시) 동일 문구 반복, 특수문자만 입력 (예시) 지원서 항목과 다른 내용 서술 (예시) 항목별 동일한 답변 기재 (예시) 타 기관명 제시 또는 타 기관에 대한 입사 지원 내용 기재시

4. 제출서류 블라인드 처리 안내

- 제출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진 및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예시) 자격증 블라인드 처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문서확인번호 : HRD-20111212082816-96885

관리번호 : 제2011-06-222916 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주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백리 301-5동 여주신도브레뉴아파트 301동 1103호			
자격종류 사항	자격종목	발급일자	취득 당시 종속명	
	083011608470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08.06.0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행정처분 사항	자격종목	처분 종류	처분일	처분내용
인계필요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원인	변경후	변경일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본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되었으며 원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본 확인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확인 가능합니다.



제 44114 호



사 서 자 격 증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 명시됨)

위 사람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2급정사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0 년 02 월 19 일

한국도서관협회장



210mm x 297mm (보통용지(1종) 120g/㎡)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 7. 31.>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신설 '16. 08. 12, 개정 '19. 12. 3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

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용 이의신청서			
성 명			
이 메 일		연 락 처	
이의신청 내용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인) 극지연구소장 귀하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